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0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	2
2.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부과·징수 사항 개정 등	12
3.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신설	23
4. 벌칙규정 정비 및 부칙	28
IV. 참고자료	33
1.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요	33
2. 수질개선부담금 개요	34
3. 수질개선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표	35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u>보전·관리</u> 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 ----- ----- <u>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u> ----- ----- -----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u>	2. <u>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u>
<u><신설></u>	<u>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u>

현행	개정안
3. ~ 7. (생략) ③ (생략)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9. (생략) <신설> 10. 그 밖에 지하수의 <u>보전·관리</u>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⑥ (생략)	<u>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 <u>시책 사업의 추진</u> 11. ----- <u>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u>----- ----- ⑤·⑥ (현행과 같음)

「먹는물 관리법」 제31조¹⁾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

1) 「먹는물 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

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이 중 100분의 40을 취수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하수법」 제30조의3²⁾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의 적정

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동법의 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2³⁾에서는 시·군·자치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

-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으로 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제31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원 조성
부과대상	샘물등의 개발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제31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제30조의3)
부과·징수주체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제30조의3)* (88개 지자체에서 부과)
부과 의무	의 무(제31조)	재 량(제30조의3)
세입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 제31조))	지자체 회계(시·군·구/ 제30조의2)* (지하수회계 운영 38개, 미운영 50개)
징수 용도	먹는물 수질관리 등(제33조)	지하수 조사, 지역관리계획 수립 등(제30조의2)
이의 신청 징수 유예	부과된 부담금 이의 신청,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 등(제31조의2, 3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징수 유예 등 (제30조의4, 32조)
벌칙	부담금의 자료가 되는 계측기 미설치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59조)	부담금의 자료가 되는 계측기 미설치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의3)

참고로 현재 국내 먹는샘물 업체별 허가 취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4,600m³/일로 가장 많고, (주)청도샘물, (주)화인바이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은 업체별 취수량에 대해 2,2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4)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

0%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국내 먹는샘물 업체별 허가 취수량]

순위	업체명	제품명	취수량(㎥/일)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4,600
2	(주)청도샘물	아이시스 8.0, 깊은산맑은물, 푸르미네	2,430
3	(주)화인바이오	지리산물하나, 지리산수, 미네랄워터, 지리산맑은샘물 등	2,379
4	(주)백학음료	아이시스, 미네랄워터 ECO, 바른샘물 등	2,271
5	(주)포천그린	폴무원 샘물, 휘오 다이아몬드 등	2,161
6	(주)대정	스파클, 탐사수 등	1,925
7	산청음료(주)	아이시스, 미네랄워터 ECO, 맑은샘물 등	1,885
8	(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동원샘물, 마이워터 등	1,738

자료 : 환경부

현행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⁵⁾ 20

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

22년 말 기준 91개, 22.4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상황이나,

국민 또는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부담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재원조달의 용이성 측면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⁶⁾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먹는샘물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지하수 보전 관리 외에 먹는물 수질관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가 유사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⁷⁾하여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담금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얼마나 문제길래, 2024.4.48
이데일리,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 적극 환영”, 2024.3.27

7) 2024년 기준 수질개선부담금의 지자체 교부액은 부담금 총액(158억원)의 60%(20%는 징수비용으로 교부)인 95억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됨에 따라 지자체 수입분에는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던 세입이 63억원 감소하는 구조임.

첫째,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재원 중 하나인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환특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에는 세입예산안에 수질개선부담금이 153억 8,200만원 편성되었고, 이 중 153억 5,100만원을 수납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세입예산안에 수질개선부담금이 158억 4,400만원 편성되어 2024년 9월 말 기준 110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음.

8) 연도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비중이 2008년 39.9%에서 2025년 예산 기준 18.5%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

[연도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내역]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3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안
총계(A)		43,846	51,470	60,454	70,294	74,991	71,761	67,787	59,762	73,715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19,863	23,002	21,844	34,845	41,496	25,568	37,203	(***)	(***)
	임의전입	9,854	11,061	18,005	16,054	11,953	30,170	13,182	(***)	(***)
	소계	29,717	34,063	39,849	50,899	53,449	55,738	50,385	49,287	60,074
자체 세입	법정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6,840	4,236	3,878	3,317	2,713	2,164	1,883	1,078
		폐기물부담금	1,145	1,827	1,964	1,951	2,044	2,099	2,273	1,743
		폐기물처분부담금	0	33	2,043	1,879	1,919	1,577	1,671	1,494
		기타	939	1,152	1,133	1,267	1,328	1,409	1,223	796
		소계(B)	8,924	7,248	9,017	8,415	8,004	7,249	7,051	5,259
	기타수입(**)	4,771	10,159	11,587	10,980	13,539	8,774	10,351	5,215	7,683
자체세입 소계(C)		13,695	17,407	20,605	19,395	21,543	16,023	17,402	10,474	13,642
공자기금 예수금		434	0	0	0	0	0	0	0	0
비율(B/A)		20.4	14.1	14.9	12.0	10.7	10.1	10.4	8.8	8.1
비율(C/A)		31.2	33.8	34.1	27.6	28.7	22.3	25.7	17.5	18.5

(*)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률 : (~2019) 15% → (2020~2021) 25% → (2022~) 23%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이자수입 등

(***) 교통에너지 환경세 전입, 임의전입금은 결산 확정 이후 확인이 가능

자료 : 환경부

[최근 4년간 수질개선부담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2021년	15,264	15,264	15,264	20,053	14,819	105	5,129	73.9
2022년	14,759	14,759	14,759	20,152	15,654	0	4,498	77.7
2023년	15,382	15,382	15,382	19,848	15,351	0	4,497	77.3
2024년 9월	15,844	15,844	15,844	15,578	11,086	0	4,491	71.2

자료 : 환경부

둘째, 안 제30조의2제4항의 특별회계 용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 제33조⁹⁾ 각호 중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제외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를 규정하였는데,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제2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제2호의2) 등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9) 「먹는물관리법」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수질개선부담금 용도 관련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개정안) 비교]

먹는물관리법(제33조)	지하수법(30조의2)	개정안(지하수법)	반영 여부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신설>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반영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미반영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미반영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0. 그 밖에 지하수의 <u>보전·관리</u>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1. ----- <u>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 질 관 리</u> ----- -----	반영

2.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부과·

징수사항 개정 등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통합하고,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체납징수액의 상한을 3%로 제한하고 이를 일할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신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

현행	개정안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u>	<u>청장</u>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u>샘물등</u>”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u>먹는샘물등</u>”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도지사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하천법」 제50조제7항----- -----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현행	개정안
	<u>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u> <u>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u> <u>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u> <u>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u> <u>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u> <u>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물이용부담금</u>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u>물이용부담금</u>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u>물이용부담금</u>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은 <u>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u>로 정한다.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u> ⑤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1. <u>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u> 2. <u>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u> ⑥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⑦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 ----- -----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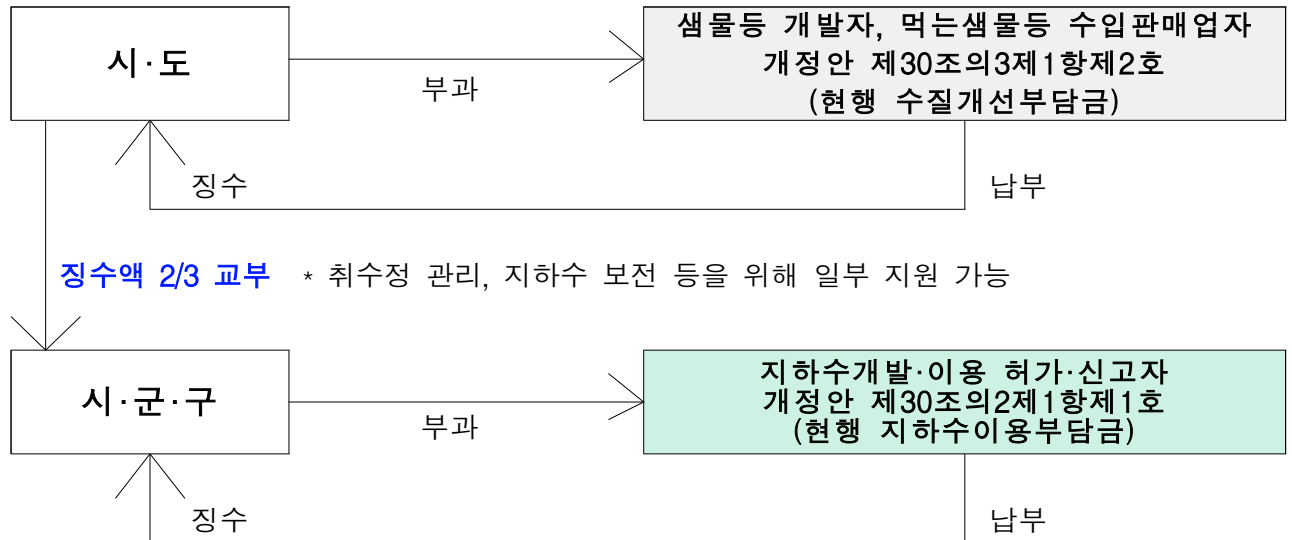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징수한다. <u><신설></u>	-----. <u>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u>
⑥ (생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농업과 어업 등을 영위하거나, 일반수도사업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0조의3제1항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함에 따라 현행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의 경우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체계]



안 제30조의3제2항은 현행 「지하수법」에 따른 부담금 감면 규정을 기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감면규정을 오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인용 조문을 수정¹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30조의3제3항은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0조의3제4항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측정 결과를 현행 환경부장관이 아닌

10) 「하천법」 제50조제6항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제5항은 기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제6항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납시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2항¹¹⁾에 따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30조의3제7항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현행과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0조의3제8항과 관련하여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7항 및 제8항¹²⁾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총액 중 40%를

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1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하고 60%는 지방자치단체로 지급(취수정 위치 시군구 등에 40%, 시·도에 20%를 귀속)하는 구조였으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당초 수질개선부담금) 중 2/3를 취수정이 위치한 시, 군 또는 자치구 등에 귀속하려는 것임.

[수질개선부담금 귀속 변동 현황]

현행	개정안	비고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취수정이 위치한 지자체	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 취수정이 위치한 지자체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1: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분 없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사용용도 및 징수목적이 유사한 2개 부담금을 통합하여 먹는물 수질 및 지하수 자원보전에 폭넓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감면제도,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등 부담금의 통합에 따른 행정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신설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라 기존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어 왔던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권리구제절차를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현행	개정안
<신 설>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 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 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 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 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 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 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 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현행	개정안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현행	개정안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2¹³⁾ 및 제32조¹⁴⁾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1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14) 「먹는물관리법」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부재하고,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납입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이의신청 등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개정안) 비교]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개정안(지하수법)	비고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미규정	제30조의4(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반영
제32조(부담금의 징수 유예와 분할납부 등)	미규정	제30조의5(지하수이용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반영

4. 벌칙규정 정비 및 부칙

개정안은 부담금 통합에 따라 기존 「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0호의2¹⁵⁾에 따른 계측기 미설치 또는 측정결과 미제출 시 벌칙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7조의3),

부칙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부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제37조의3(벌칙) ----- ----- ----- -----.
<신설>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15) 「먹는물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③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등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은”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으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현행	개정안
	제53조제1항 중 “배출부과금·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총량초과과징금”으로,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제10호의2는 계측기 미설치 또는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계측기 설치 및 보고의무가 「지하수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부칙안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이의신청,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적용규정이 법률안 개정 이후 시행되도록 적용례를 두며, 「중소기업창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지자체 이관으로 세외수입 등 회계처리 절차 마련¹⁶⁾, 지하수특별회계 항목 신설 및 회계처리절차 마련, 지하수 관련 예산 활용방안 마련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소정의 행정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 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문 의 처
02) 6788-5533

16) 먹는샘물 관련 부담금은 시·도에서 100% 징수한 후에 총액의 2/3는 시·군·구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참고1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요

- **(부과목적)**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원 조성(토~)
-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30조의3
- **(부과대상)**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부과단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운용체계)** 시·군·구청장(부과) → 지하수 개발·이용자(납부) → 시·군·구청장(징수)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등으로 활용
 - * 시·군·구청장이 관할지역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설치 가능
- **(징수실적)**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19억원 부과, 115억원 징수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합계	4,093,799	177,190	3,700,037	170,465	96.2
2023	281,295	11,938	246,394	11,536	96.6
2022	290,392	11,836	256,585	11,549	97.6
2021	297,472	11,865	268,742	11,555	97.4
2020	302,391	12,545	268,164	12,158	96.9
2019	311,250	13,765	274,091	13,354	97.0
2018	320,935	14,215	300,849	13,744	96.7
2017	332,947	14,693	303,615	14,132	96.2
2016	315,684	13,857	287,978	13,283	95.9
2015	288,746	12,083	268,629	11,601	96.0
2014이전	1,352,687	60,393	1,224,990	57,553	95.3

참고2

수질개선부담금 개요

-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
-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 **(부과대상)**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부과단가)** 취수량 또는 수입량(m³) x 2,200원/m³
- **(운용체계)** 환경부(위임) → 시·도지사(부과) → 영업자(납부) → 시·도지사(징수) → 환경부(세입) → 세입 징수비용 교부* 및 환특 사업비(세출)

* 시·도 징수비용 20% +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 40%

- **(징수실적)**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98억원 부과, 154억원 징수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합계	12,067	700,347	9,381	438,608	62.6
2023	522	19,848	319	15,351	77.3
2022	518	20,838	350	15,672	75.2
2021	589	20,053	348	14,819	73.9
2020	519	19,768	323	14,451	73.1
2019	606	20,572	344	14,791	71.9
2018	510	21,375	329	15,035	70.3
2017	548	21,553	330	15,257	70.8
2016	592	22,125	349	14,269	64.5
2015	428	20,890	331	13,023	62.3
2014이전	7,235	513,325	6,358	305,940	58.9

참고3

수질개선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표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기관	시·도지사	시·군·구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부과대상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자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50톤/일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100톤/일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산정기준	취수량 또는 수입량(m ³) × 2,200원/m 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사용용도	1.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 지원 2.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지원 3.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의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1.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5.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9.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연체료	-	
강제징수 절차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부과제외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플 등	규정 없음
감면대상	규정 없음	1.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3호 및 제4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감면기준	규정 없음	1. 고려사항 -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2. 감면기준 : 시·군·구의 조례로 결정
부과시기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신고) 시
납부기한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납부기한 연장	유예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